# '25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계획(수정)

「방위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방산 수출기업의 홍보 및 수출 진흥을 위한 '25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2025년 2월 12일 방위사업청장

## 1. 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

나. 사업기간 : '25. 1. 1. ~ '25.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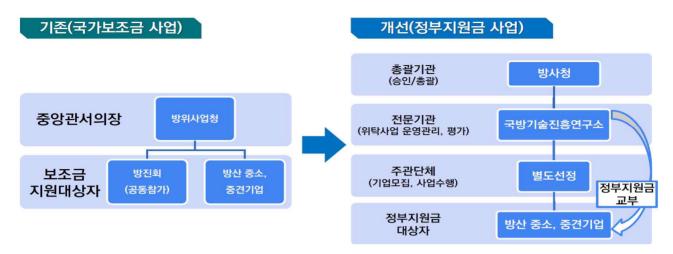
다. 주무부처/운영기관 :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

라. 관련규정 :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88호)

마. 지원기준

구 분	지원	<sup>면</sup> 대상	지원항목	지원율	지원한도
	1단계 (사전지원)		<ol> <li>사전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li> <li>온오프라인 해외홍보 및 광고</li> <li>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또는 전자 카달로그 제작</li> <li>기타 방산전시회 참가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원</li> </ol>	100%	1백만원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통합 한국관)	2단계 (현지지원)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국내출고지-전시장 부스-국내입고지) *국내 발생하는 운송비는 제외 3. 통역비 4. 홍보물 제작비 5. 공동교통비(개별참가 중소기업 포함)	100%	3억원
		3단계 (사후지원)	1. 공인기관이 수행한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2. 샘플발송(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내 인정)	100%	1백만원
		중견기업 결참가)	<ol> <li>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li> <li>전시물 운송비</li> <li>홍보물 제작비</li> </ol>	80%	1천만원
국내 전시회		중견기업 별참가)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3. 홍보물 제작비	80%	5백만원

- 1) 주요 변경사항
  - 사업 운영구조



## 2 참가방식

참가형태		기존	변경
공동참가	해외전시회	중소기업관	통합한국관*
	애최진지회	(기업전시관)	(기업전시관, 정부홍보관)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기업 자체 전시관	동일
게 달심기	국내전시회	기업 자체 전시관	동일

- \* 기업전시관과 정부홍보관을 함께 운영하는 공식 한국관(Korea Defense Zone)으로, 정부 및 방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K-방산 홍보 및 G2G 협력 활동 수행
  - 3 참여기업 지원 확대
    - 공동참가(통합한국관) 참여기업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 사전지원, 현지지원, 사후지원 총 3단계에 걸친 지원 확대
  - 4 참여기업 선정 절차



- 참여기업 선정기준
  - 수출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평가 중심으로 참여기업 평가
    - \* 수출활동과 연관된 시장진출노력 평가 항목 세분화, 방산수출시장 조사를 통한 품목/수출경쟁력 평가항목 추가, 기업 경영상태 건전성 평가항목 추가

# 2. '25년 지원 대상 전시회

통합한국관

구분	전시회명	권역	개최국가	전시시기	전시분야
1	Shot Show	미주	미국	1월	총기류
2	SPIE Photonics West	미주	미국	1월	레이저, 광학,양자
3	Indo Defence	아시아	인도네시아	1월(잠정)	방산
4	Marine West	미주	미국	2월	해상
5	IDEX / NAVDEX	중동	UAE	2월	종합
6	IWA Outdoor Classics	유럽	독일	2월	지상
7	Aviation Festival Asia	아시아	싱가포르	2월	항공,우주
8	HAI Heli Show	미주	미국	3월	항공
9	Saudi International Airshow	중동	사우디	3월	항공
10	Avalon & Australian International Airshow	오세아니아	호주	3월	항공
11	Aeromart Montreal	미주	캐나다	3월	항공
12	Securex West Africa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3월	종합
13	Satellite	미주	미국	3월	위성
14	UDT Europe	유럽	노르웨이	3월	해상
15	Modern Day Marine	미주	미국	4월	해상
16	Sea Air Space	미주	미국	4월	해상
17	SPIE Sensing	미주	미국	4월	센서
18	Drones & Uncrewed Asia	아시아	싱가포르	4월	무인시스템, 사이버보안
19	LIMA	아시아	말레이시아	5월	해상/항공
20	IDET	유럽	체코	5월	기타
21	FEINDEF (Feria de Madrid)	유럽	스페인	5월	<u> 종</u> 합
22	CANSEC	미주	캐나다	5월	종합
23	KADEX	아시아	카자흐스탄	5월	<u>종</u> 합
24	Defence Exhibition Athens	유럽	그리스	5월	종합
25	MADEX	아시아	대한민국	5월	해상
26	NAVAL Defense Philippine	아시아	필리핀	6월	해상
27	Paris Air Show	유럽	프랑스	6월	항공
28	Inamarine	아시아	인도네시아	7월	해상

구분	전시회명	권역	개최국가	전시시기	전시분야
29	IDEF	유럽	튀르키예	7월	종합
30	MSPO	유럽	폴란드	9월	<u> 종</u> 합
31	DSEI	유럽	영국	9월	<u> 조</u> 합
32	AEROSPACE & DEFENSE SUMMIT TAIPEI	아시아	대만	9월	항공,방산
33	DEFSEC	미주	캐나다	10월	<u> 조</u> 합
34	AUSA	미주	미국	10월	지상
35	ADEX	아시아	대한민국	10월	공군
36	Dubai Airshow	중동	UAE	11월	항공
37	International maritime exposition	오세아니아	호주	11월	해상
38	Defense & Security	아시아	태국	11월	종합
39	MILIPOL PARIS	유럽	프랑스	11월	방산,보안
40	EDEX	아프리카	이집트	12월	종합

<sup>\*</sup> 상기 전시회는 전시회 주최국/측 사정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상한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3. 신청절차

절 차

###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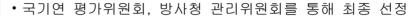
사업공고 및 참여희망기업 모집 (참여기업)

- 반기별 방사청/국기연/주관단체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 공고
- 지원사업 참가 희망 참여기업은,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참여기업 선정** (국기연, 청)







**협약체결** (국기연 - 참여기업)

- •전시회별 1배수 기업 대상 협약체결(국기연↔참여기업)
- 1배수가 아닌 기업은 후보기업으로 안내(POOL 구성)



진도점검 및 1단계(사전지원)

- 협약기업과 수시 진도점검
- 통합한국관을 신청한 참여기업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전시회 1단계(사전지원) 지원



2단계(현지지원)

• 통합한국관/개별참가 협약기업 전시회 참여



최종보고서 제출

• 통합한국관/개별참가 협약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 회계기관의 사업비 정산내역 검토서 포함



최종평가

- 통합한국관/개별참가 협약기업 대상 평가위원회
- 최종 대면평가(우수 80점/보통 60점/미흡 60점 미만 판정)
- 우수, 보통 : 정부지원금 지급
- 미흡 : 평가를 통해 제재 및 환수범위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성과분석

- 반기별 전시회 성과, 기업별 성과 등 종합 분석
- "우수", "보통" 판정 기업, 3년간 성과활용실적 보고서 제출



3단계(사후지원)

- •최종평가 우수판정 기업 대상 사후지원
- "우수"판정받은 년도로부터 차년도 1회까지 지원

### 4. 신청자격

- o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아래 항목 중 한 개 이상 적합한 기업
  - 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2차 협력업체
  - 나. 국방전자조달 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 다.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보유 업체

### 5. 제출서류

- 가. 참여기업 신청자격 증빙서류
- 나.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 서식)
- 다.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붙임 1 서식)
- 라. 전시대상 품목 상세 설명서(붙임 2 서식)
- 마.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바. 최근 3년간 직·간접 수출실적증명원
- 사.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 3 서식)
- 아. 동일 · 유사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등(붙임 4 서식)

## 6. 신청 유의 사항

- 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전시회 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시회 개최 8주 전까지 취소 의사를 통보하고, 무단 불참 시 향후 2년간 방산전시회 참여 지원사업 선정 시 배제될 수 있음.
- 나. 정부지원금은 당해 연도 12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 당해 연도 배정예산과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라. 지원항목별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지원율 및 지원한도를 적용 하여 지급함

## 7. 기타 안내 및 문의처

- 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 2079-6376
- 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 055) 751-4918
  - ※ 신청관련 문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1017101	업체명 (or단체)						추천 순위	
참여기업	담당자	부서			담당자(	직위)	( ·	성명)
	연락처	전화		FAX			E-Mail	
		영문	(약칭)					
	전시회명	0 4	(원명)					
		한글						
전시회	기간	20 .	. ~ 20		개최 주기	연2회, (	개년, 격년,	기타( )
개요	참가연혁			( )년	부터 (	)회 참	가	
	직전	Ž	참가규모	상	달실적(U	ISD)	계약	실적(USD)
	전시회							
	참가실적	(국가명)	(국가명) (도시명)					
	전시품목							
참가내역	면적	( )sqm, 참가업체 개사(공동참가 경우)						
	(통합한국관	□ 사전 해외바이어 정보제공/온라인 상담						
	의 경우) 사전마케팅	□ 온오프라인 해외홍보 및 광고 □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및 전자 카달로그 제작						
	- 1 = 1 = 11 = 1	 ○ 임차					·· ·	
	カロネのつ	○ 장치비 :						
	정부출연금 지원	○ 운송비 :						
예상 소요액			간접비 : " ·					
		소계						
	자체부담	○ 출장 ○ (홍도 소계	물 제작비, 기	타 등):				
	합계	백만원(USD : 천불)						
기대효과								

위 내용과 같이 방산전시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서

- 2. 전시 대상 품목 상세설명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4.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등

년 월 일

신청자: (법인인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서

1	J	H	$\mathbf{B}$

가. 전시회명 :

나. 참가기간 :

다. 참가규모

참가형태 ☑ (부스면적(m²))	전시/홍보품목	주요사업 분야 및 품목
□ 통합한국관		
(사전미팅 포함)		
□ 개별참가		
$(00\mathrm{m}^2)$		

# 2. 참여기업 정보

가. 담당자 정보

시ㄹ	한글	영문	
이 름	부서	직위	
연락처	사무실	팩스	
건탁시	핸드폰	이메일	

나. 기업 개요

기 업 명		대표자	
기업 형태	중소/중견기업	설립일자	
매출액(20 )		종업원수	
소 재 지			
주요제품・기술			
홈페이지			

다.	. フ	[업	현	황

가. 일반현황		
나. 연혁		
다. 주 생산품		
라. 비전 및 경영현황		

## 라. 주요 실적

연구개발, 특허, 납품 등 주요 경영실적

## 3. 수출 실적 (USD 기준)

구분	년도별	수출액
	D-5년	
최근 5년	D-4년	
<b>방산</b> 수출액	D-3년*	
(평균)	D-2년*	
	D-1년*	

\* 연간 수출실적 증빙서류(관세청, 무역협회, 외환은행 등), 최근 3년 이내 방산 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이 발생할 시 계약 실적 증빙서류 별도첨부 요망

## 4. 수출추진 현황

국가명	기관/업체명	품목	수량(금액)	수출단계	향후계획
			(000 \$)		

# 5. 최근 3년간 방산전시회 참가실적

구분	년도별	세부사항
방산	D-3년	공동참가 회 / 개별참가 회 천원
전시회	D-2년	
참가실적	D-1년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전부 기재

# 6. 목표 시장 분석

국가 선정 사유			
참가 목적			
목표고객수	00명	목표미팅건수	00건

## 7. 세부 활동계획

## 가. 일정별 활동계획

일 시	예 정 사 항
20	ex) 00 제품 홍보, 시연 및 바이어 상담
20	

## 나. 사전 활동계획 (광고, 홍보, 우편, 이메일, 미팅 희망업체 접촉 등)

작성방법: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해 우리 기업에서 준비할 사전 활동 기재 해외전시회 특징 및 전시회 선택 이유 등

### 작성예시:

- KOTRA 해외시장 조사의뢰 OOO지역 신규 바이어 00명 목표
- 전시회 참가 안내 및 초청 이메일 발송 (총 0회, 00명)
- 미팅 희망 업체 000사 대상 요청 메일 발송

### 다. 현장 활동계획 (부스 내 활동, 홍보물/기념품 배포 계획 등)

작성방법: 해외전시회에 참가하여 현장에서 전개할 활동 기재

작성예시:

신규 바이어 발굴: 000사, 000사 접촉상담 예정 스케줄 현황 (00건 예정)

번호	일자	회사명/바이어명	상담제품	주요 협의 사항	위치 등

등 현장 활동 계획 상세히 기술

\* 추후 결과보고서 반영

## 8. 수출성사(예상) 핵심조건 분석 (아래 예시 참고하여 작성)

- ① 제품명: 0000
  - 기존 수출추진 현황
  - 수출성사(예상) 핵심 조건
    - · 핵심 에이전트 선임
    - 절충교역 또는 반대급부 의무 이행
    - 기술이전
    - · 납품 후 품질보증 이행(X년) 등
    - · 가격분석, 설비계획, 경쟁력 증대방안 등
  - ② 제품명: 0000 (상기 ①번 양식과 동일)

# 9. 대상국/업체와의 협력 방안 (아래 예시 참고하여 작성)

세부 목표	대상국/업체와의 협력 방안
① 공동 R&D 또는	·합작투자 법인 설립
공동생산	·공동 R&D 센터 개소
② 판매 협력 에이전	·에이전트 수수료 협상
트 발굴	·판매 대상제품 협상
	·가격 / 제품구성 협상
	_
③ 00입찰 참가	·스펙 변경요구사항 oo 적용
추진	· 후속군수지원 방안
	_

## 10. 최근 3년 방산전시회 참가 실적(수출이 발생한 경우, 증빙 필수)

전시회명(국가)	기간	수 <u>출</u> 실적 발생여부	최초 미팅 일자	미팅 대상	계약액 (USD)
			20		
			20		
없을 경우도 "해당없음" 으로 작성					

# 11. 제59조(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 해당여부

구분	내 용	발급기관	발급일자
신청자격	방산업체/방산업체 납품실적 등		
참여제한	없을 경우도 "해당없음" 으로 작성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12. 방산전시회 참가 이후 수출 활용성 및 파급효과

향후 방산수출계획 및 파급효과 등 기술
-----------------------

# 13. 방산전시회 참가 예상지출 및 정부지원금 신청 내역

· 개별참가인 경우 작성

구분	금액(천원) (지급율 %)	세부 항목
정부지원금		o 임차료 : o 장치비 : o 운송비 :
자체부담		o 출장비 : o 홍보물 제작비 : 
총 비용		천원(USD : 불)

U 양독별 산물근거사료(선칙서 등)	

# 전시 대상 품목 상세설명서

기업명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1. 성명 : 2. 부서명 : 3. 연락처 : (전화번호, E-mail		티)		
			품 목 1		
		품명(	(한글)		
		품명(	(영문)		
<b>&lt;</b> ۸۱	진>	기능 !	및 용도		
	목표 대상(국기 참가시 홍보				
			품 목 2		
		품명(	(한글)		
		품명(	(영문)		
<사 진>		기능 !	및 용도		
1. 수출 목표 대상(국가 등) 2. 전시회 참가시 홍보 전략 등					

\* 기재한 모든 전시대상 품목의 "방산물자등"증빙자료 <u>각 1부</u> 필수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중

방위사업청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방위사업청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ㆍ이용할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b>사업 종료일로부터 <u>5년</u>까지 보유·이용됩니다.</b>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li>▶ 방위사업청,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li> <li>▶ 한국방위산업진흥회(주관단체)와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li> </ul>
제공받는 자의 목적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 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 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b>사업 종료일로부터 <u>5년</u>까지 보유·이용</b> 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연락처	담당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 기업[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중

본인은 방위사업청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 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 페이지 및 관련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후 5년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     가능합니다.				
경우 불이익					
기업(신용)정보	법이의 이의 가지 법이의 기업/사의/처터로 스피트 이유를 구제 등이합니다				
수집·이용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ul> <li>▶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li> <li>▶방위사업청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li> <li>▶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li> </ul>
제공·조회의 목적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수출 실적 및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지원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방진회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li>▶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li> <li>▶방위산업진흥회와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li> <li>▶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li> </ul>
제공받는 자의 목적	<ul> <li>▶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li> <li>▶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li> <li>▶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li> </ul>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중기부, 산자부, 국세청, 관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 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 방위사업청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지원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방위사업청에 제공하여, 방위사업청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방위사업청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	-	

-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방위사업청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동일·유사 사업 중	수복지원	여부 확약서
전시회명			
전시품목			
참여기업		담당자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협약 해약, 정부지원금의 환수(이자 포함), 참여제한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강제징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법적 구상 및 제재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 1. 동일 수행내용을 전시회 주최, 타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지원비 중복 부정획득
- 2. 기 완료된 내용에 대한 신청
- 3. 결과보고서 및 관련 회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 <u>'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실이 없음을</u>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59조의 참여 제한 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전시회 개막일 기준으 로 발생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강제징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어떠한 법적 구상 및 제재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1. 「방위사업법」제62조(벌칙)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전시회 개막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 「대외무역법」제53조(벌칙)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전시회 개막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 「방위사업법」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시회 개막 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 4. 최근 2년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가취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방산전시회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5.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70조(협약 체결) 및 동 지침에 따라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기업
- 6. 당해연도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연 3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 연 5회(계열사 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이상, 국외 방산전시회의 통합한국관 참가 연 6회 이상 참가 한 기업
- 7.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 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참여 가능)

20 . . .

기 업 명 :

대표이사: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협약서

□ 과제번호 :	EX240	OOXX		
□ 협약기간 :	2022년	년 월 일 ~ 2O	년 월 일 (007	개월)
□ 담 당 자 :	소속	업체명 직	위 000	성명 000
□ 총 사업비(현금)				. 2 4)
		I		(단위 : 천원)
세부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
예) 00전시회(00품	목)			
예) 00전시회(00품	목)			
위 방산전시회 참기 다음과 같이 협약을			국방기술진홍연구	<sup>7</sup> 소와 참여기업
		20		
□ 협약당사자				
전 문 기 관 : 국병	방기술진	흥연구소 소장		
참 여 기 업 :		(C	배표자)	

### 제1조 (사업의 대상)

참여기업명(참여기업)은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서 (이하 "사업계획서")상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1) 지원사업 분야

순번	국가	전시회명	시기	전시품목

### 제2조 (사업의 신의성실수행)

본 협약에 의한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업명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방위사업청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 훈령 등 관련규정의 숙지 및 준수, 동 협약 상의 민간부담금 부담, 사업계획서에 따른 성실사업 추진 및 목표 달성, 방위사업청 장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사업완료 후 요 구사항 및 자료제출,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및 시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3조 (사업비의 조성, 지급 및 운영)

(1) 사업비는 아래 명시된 "정부지원금"과 참여기업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조성하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에게 지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정부지원금: 천원

(나) 민간부담금 : 천원

(다) 총 사업비 : 천원

- (2) 참여기업명은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하고 그 증빙자료를 최종평가 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명이 부담한다.
- (4) 참여기업명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집행해야 한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사업비의 지급 및 운영에 따른 그 외 사항은 "훈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에 따른다.

### 제4조 (결과보고)

- (1) 참여기업명은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포함한 진도보고서를 전문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전문기관은 진도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참여기업명이 제출한 보고서 및 증빙 자료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명에게 사업 내용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3) 참여기업명은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4) 참여기업명은 지원사업을 종료한 경우,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 7부,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1부,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회계정 산을 의뢰하며, 회계검토비용은 참여기업이 지급한다.

### 제5조 (자료의 제출 등)

- (1) 참여기업명은 전문기관 소속직원의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2) 참여기업명은 지원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으로 평가 또는 해외 성능시현 사후 신청한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3년간 매월 12월 말까지 지원성과활용실적 보고서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전문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성과활용실적 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유와 함께 보완 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 (협약의 변경)

(1) 전문기관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은 훈령을 따른다.

#### 제7조 (협약의 해약)

- (1) 전문기관은 아래 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 지원사업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 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당해연도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연 3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 연 5회 (계열사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이상, 국외 방산전시회의 통합한국관 참가 연 6회 이상 참가한 기업

- 다.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정부출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횡령, 편취, 유용, 타목적 사용 등을 포함)
- 마. 사업추진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바.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 아.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 자.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 차.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카.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 타. 기타 사업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파. 직전년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가취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해외전시회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3) 사업수행자는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 받은 정부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전문기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 결정액을 전문기관의 통보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4) 전문기관은 참여기업명에게 "훈령" 제18조 및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제제 및 해약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해 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정부출연금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대상 등 제재기준은 청 훈령 [별표2]에 따름)

### 제8조 (관계법령의 준수)

- (1) 참여기업명은 본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청 훈령 제724호)을 준수한다.
- (2) 참여기업명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기관 은 참여기업명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제10조 (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는 국 제경쟁력강화지원사업 운영규정(청 훈령 제724호) 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이 참여 기업과 협의한 결정에 따른다.

### <붙임>

- 1.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서
- 2.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사용인감계
  - \* 덧붙임 : 참여기업 법인인감증명(개인기업인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 통장사본
- 3.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